불법유동광고물
정비안내문

최근 풍선간판(에어라이트), 입간판, 배너 등
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,
보행자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
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할 경우
강제철거 조치됨을 알려드리니,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쾌적하고
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

정 / 비 / 대 / 상

풍선간판(에어라이트)

입간판, 배너 등

불법 현수막

※ 불법 유동광고물이란?

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현수막, 풍선간판(에어라이트), 입간판, 배너 등의
유동광고물을 도로변, 인도, 건물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·표시한 경우

★ [법적조치]

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「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제10조의2(행정대집행의 특례), 제20조(과태료)에 의하여 적발 즉시 수거하여 폐기하고,
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 불법 유동광고물은 사전경고 등 계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(수거)할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
☎ 241-8031~3